

1. 개정이유

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,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(안 제2조의5제1호가목2))

- 1)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

나.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(안 제13조제5항 등)

- 1)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

다.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(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)

- 1)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
- 2) 별지 제17호서식의 (임시)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5제1호가목2) 본문 중 “1의”를 “2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중 “포함한다)를”을 “포함한다)와 대상 가설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“없음”을 “연장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설건축물 전면, 후면 및 양 측면 사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작성방법란의 제7호 중 ““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(MI 등급)-최대지반가속도”를”을 ““내진등급 (필요시 인증여부)”을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8호 중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”을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다목인 경우에는 “무량관 구조”라고 적으며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라목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”으로 하고, 후단의 “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의 앞에 “이 경우”를 추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5제1호가목2)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현황사진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5(적용의 완화) 영 제6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.	제2조의5(적용의 완화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	1. ----- -----.
가. 연면적의 증가	가. -----
1) (생략)	1) (현행과 같음)
2) 그 외의 건축물: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. 다만, 영 제6조 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.	2) ----- ----- - 2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나.·다. (생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가설건축물) ① ~ ④ (생략)	제13조(가설건축물) ① ~ ④ (현

략)	행과 같음)
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포함한다)와 대상 가설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----- -----.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사용승인신청) ①법 제22조제1항(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(임시)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6조(사용승인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: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(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	<삭 제>

<u>칙」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 8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